

(별표) 비전임교원 임용기간 등

직종	구분	임용기간	보수
명예교원	명예교수	종신	-
	행단석좌교수 문행석좌교수	2년 이내, 재임용 가능(1회 한정)	별도 계약
	HCR석좌교수 특훈교수	3년 이내, 재임용 가능(1회 한정)	별도 계약
초빙교원	초빙교수	1년 이내, 재임용 가능	월정액 강의료
	객원교수	1년 이내, 재임용 가능	시간당 강의료
	대우교수	1년 이내, 재임용 가능	별도 계약
	겸임교수	1년 이내, 재임용 가능	시간당 강의료
	교환교수	1년 이내, 재임용 가능	별도 계약
석좌교원	석좌교수 특임교수	2년 이내, 재임용 가능	별도 계약
연구교원	연구교수	3년 이내, 재임용 가능(1회 한정)	별도 계약
산학교원	산학교수	1년 이내, 재임용 가능(1회 한정)	별도 계약
학연교원	학연교수	3년 이내, 재임용 가능	별도 계약

※ '보수(정액) 미지급시, 강의료 지급' 또는 '보수(정액) 지급시, 강의료 미지급' 원칙

※ 비전임교원의 재직기간은 통산 6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주1)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직종에 따라 1년, 2년,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학년도 또는 학기 종료일에 따라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이를 초과할 수 있음

주2) 연구교수와 산학교수의 재임용이 2회 이상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